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3-10-29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2나60520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피항소인	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9. 17. 선고 2000가단190294 판결
변 론 종 결	2003. 11. 11.
판 결 선 고	2003. 12. 23.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A의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 중 원고 A의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57,695,273원 및 이에 대한 2000. 8. 9.부터 2003. 12.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위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B,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및 원고 B, C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 A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부분과 원고 B, C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부분은 당심에서의 지연손해금부분의 청구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7,322,612원, 원고 B에게 55,277원, 원고 C에게 22,11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9. 5. 12.부터 2003. 12.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244,723원, 원고 C에게 97,88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0. 8. 9.부터 2003. 12.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원고 A과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A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비용은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원고 B, C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비용(당심에서의 추가청구에 관한 비용 포함)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6. 제1항의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9,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9. 5. 12.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10,141,192원, 원고 B에게 600,000원, 원고 C에게 24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0. 8. 9.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지연손해금 청구는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7,844,113원, 원고 B에게 100,000원, 원고 C에게 4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9. 5. 12.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갑 제9, 10, 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 갑 제24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2001. 12. 19.자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 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및 원고들의 지위

(1) G은 1999. 5. 12. 07:10경 그의 아버지인 H 소유의 I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부안여객 차고지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부안고등학교 방면에서 부안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골목에서 뛰어 나오는 성명불상의 보행자를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주행 중이던 원고 A 운전의 J 프린스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B는 원고 A의 아내이고, 원고 C은 그 아들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위 H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와 사이에 위 사고 일시를 포함한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정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 위 책임보험(대인배상 I)의 내용은, 위 G을 비롯한 피보험자가 이 사건 사고일을 포함한 보험기간 동안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보험자인 위 피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다.



(2)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 한다)와 사이에 위 사고일시를 포함한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정하여 위 원고를 포함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이 사건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받기로 하는 내용(이하 '무보험차상해특약'이라 한다)을 포함하고 있는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소나타 승용차는 위 특약상의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

(1)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 및 무보험차상해특약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의 보상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이 사건 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으로 한다(제2조 제1, 2항).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이 책임보험(대인배상 I)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회사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무보험차상해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제38조 제2항 제1호).

(다)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200,000,000원을 한도로 하고,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별표 1>의 보험금 지급기준 중 '2. 대인배상Ⅱ' 및 '4.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대인배상 I)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과 피보험



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제42조 제1, 2항).

(라)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2) 이 사건 보험약관 〈별표 1〉은 '1. 대인배상 I - 책임보험, 2. 대인배상 II - 책임보험초과손해, 3. 대물배상, 4. 과실상계 등'으로 나누어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그 중 '1. 대인배상 I'은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해당하고, '2. 대인배상 II' 및 '4. 과실상계 등'은 무보험차상해특약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보험약관은 위 '1. 대인배상 I'과 '2. 대인배상 II'에서 각각 보험금을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으로 그 항목을 구분하여 그 지급기준을 설정하였는데, 위 '1. 대인배상 I'과 '2. 대인배상 II'의 보험금 지급기준은 모두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산출하도록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되, 다만 '1. 대인배상 I'에는 위 산출된 부상보험금에 관하여는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후유장해보험금에 관하여는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다(이 사건 책임보험의 상해등급 및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방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별표 1과 제3호 관련 별표 2를 각각 따르도록 되어 있다).

(가) 부상보험금

1) 치료관계비로 의사의 진단 기간 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입원료,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 처치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를 지급한다.



2) 위자료는 피해자 본인에게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나) 후유장해보험금

1) 위자료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차등 인정되는 피해자 본인분과 피해자 본인분의 50%에 해당하는 배우자분, 20%에 해당하는 자녀분의 합산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하고, 부상보험금의 위자료와 후유장해보험금의 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며, 노동능력의 상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의 50%에 상당한 금액을 위에서 지급하는 위자료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2) 상실수익액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율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넷즈 계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노동능력상실율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의사가 판정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며, 노동능력상실기간은 취업가능 연한을 60세로 하여 그 기간을 산정하고,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타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그 기간을 산정한다.

(다) 과실상계 등(‘2. 대인배상Ⅱ’에는 이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별도로 규정된 ‘4. 과실상계 등’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상해 및 후유장해

(1) 원고 A은 위 사고로 인하여 제4-5,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외상성 경추 제



6, 7번 척수공동증, 다발성 경추 신경근증, 좌측 척골 신경병변 등의 상해를 입고, 2002. 11. 20. 위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추간판적출술 및 금속고정술을 시행받았는데, 위 수술을 시행받은 이후에도 현재까지 양측 수지의 이상감각증, 정부의 동통성 운동장해(경도), 좌측 척골신경 부전마비 등의 신체장애가 후유장애로 남았다.

(2) 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제5-6, 6-7 경추부에 퇴행성 변화 등의 기왕증이 존재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발생 및 확대, 그리고 노동능력 감퇴의 한 원인이 되었는데, 위 기왕증의 기여도는 50%에 이른다(이에 관한 당심 법원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일부는 배척한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위 보험기간 내에 위 무보험차상해특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E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입은 원고 A 및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무보험차상해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험금의 산정기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보험차상해특약의 경우 보험금 지급기준은 이 사건 보험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을 1인당 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피고 E는 무보험차상해특약에 의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배상의무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보험약관의 <별표 1>에서 정



한 보험금 지급기준 중 '2. 대인배상Ⅱ' 및 '4.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만을 제한하여 인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아래에서는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항목별로 위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험금을 산정하기로 한다(원고들은, 피고 E가 원고 A과 사이에 무보험차상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보험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전혀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관한 위 약관조항을 무보험차상해특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른 자동차보험회사에서도 위 무보험차상해특약과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비슷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실정, 원고 A의 직업, 경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이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직접 구두로 들었다면 위 무보험차상해특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게다가 원고들은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위에서 인정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사실상 철회되었다고 볼 것이다).

다. 무보험차상해특약 보험금의 범위

(1) 부상보험금

(가) 치료관계비

1) 기왕치료비 : 17,505,920원(인정근거 : 갑 제23호증의 3 내지 8, 갑 제25호증의 1 내지 13,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 ; 원고 A은 기왕치료비로 위에서 인정된 금원 외에도 116,000원을 더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지출하였다는 116,000원은 치료비가 아닌 제증명료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향후치료비(인정근거 : 당심 법원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가) 1년간 치료비(당심 감정일인 2003. 5. 20.부터 3년간)

2,625,000원{진통소염제, 근이완제 및 물리치료비 : 1,825,000원(5,000원 × 365회) + 경추 MRI 검사비, 근전도 검사비 등 : 800,000원(1회)}

나) 계산(원고 A이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3. 11. 12. 이후로서 당심 감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마다 위 비용을 연 1회씩 3년 간 지출하는 것으로 하되,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61개월, 73개월, 85개월이 경과한 때에 향후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고, 월 12분의 5분의 복리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라이프닛즈 계산법에 따라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환산한다)

5,818,182원{2,036,926원(1년간 치료비 2,625,000원 × 0.77597218, 원 미만 버림 ; 이하 같다) + 1,937,786원(1년간 치료비 2,625,000원 × 0.73820424) + 1,843,470원(1년간 치료비 2,625,000원 × 0.70227454)}

3) 기여도 참작

11,662,051원(23,324,102원 × 0.5, 원고 A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기왕증의 기여도가 50%인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나) 위자료

앞에서 본 원고 A의 상해 부위와 정도 및 기왕증과 제1심 법원의 2001. 12. 19.자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경우 이 사



건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 16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2호 관련 별지 1의 9급 11호 '척추체간관절부염좌와 주위연부조직(인대·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내지 12호 '기타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당심 법원의 대한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위 원고의 상해등급이 1급 3호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으나, 원고가 입은 상해를 위 항목의 '척추체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 증상으로 인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 힘들고, 위 원고의 기왕증을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채용하지 않는다),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책임보험의 상해등급 9급에 해당하는 부상보험금의 위자료는 14만 원에 해당하므로, 피고E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4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유장해로 인한 위자료가 위 금액보다 많으므로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는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합계

11,662,051원

(2) 후유장해보험금

(가) 원고 A의 상실수익액(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증거들,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20호증, 갑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K생

연령 : 45세 4월 (사고당시) 기대여명 : 28.79년



나) 정년 : 60세

다) 현실소득액 : 2,300,000원

라) 소득의 상실 :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소득의 상실'이란 사고 전 얻고 있던 수입을 사고 후 얻지 못하거나 사고 전의 수입에 비하여 사고 후의 수입이 적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전 유한회사 L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급여소득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후인 2000. 12. 26. 위 후유장애로 인하여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함으로써 2000년에는 1년 동안 36,215,180원의 수입을 올리던 것을 2001년에는 7,260,000원의 수입밖에 얻지 못하였으므로 상실수익액 청구의 요건인 '수입의 상실'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마) 노동능력상실을

원고 A이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및 그 치료·수술 경과와 후유장애에 비추어 보면, 양측 수지의 이상감각증 및 좌측 척골신경 부전마비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15.5%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고(맥브라이드표 말초신경 항목 I. B. 6. e. (1)항, 직업 계수 5등급, 기왕증의 기여도 50%를 적용함 ; 당심 법원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양측 수지의 이상감각증에 대하여는 맥브라이드표 말초신경 항목 I. A. 3. a항을, 좌측 척골신경 부전마비에 대하는 같은 항목 I. B. 3. b항을 각 적용하여 이를 복합장애로 판정하였으나, 위 후유장애들은 모두 경추부 척수공동증으로 병발한 자각적 내지 타각적 증상들이므로 당심 법원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동일한 장애를 2중으로 중복평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1심 법원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채택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하나의 장애등급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추간판적출술, 금속고정술을 시행받기 이전에는 경추의 중증의



수핵증후군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5%의 노동능력 상실
이 있었다가, 수술 이후 요추부의 동통성 운동장해(경도)가 후유장해로 남아 16.5%
의 노동능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볼 것이며(수술일인 2002. 11. 20.까지는 맥브라이
드표 척추손상 항목 V. B항, 직업계수 5등급, 기왕증의 기여도 50%를 적용하고, 그 다
음날부터는 같은 항목 V. D. 2. c항, 직업계수 5등급, 기왕증의 기여도 50%를 적용함 ;
제1심 법원의 위 신체감정축탁결과는 위 수술이 시행되기 전에 그 감정이 이루어진 것
이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심 법원의 신체감정축탁결과
를 취신한다), 위 후유장해들은 복합장해인데, 좌측 손의 이상감각과 척골신경 부전마
비는 영구장해로 보고, 경추부의 운동장해는 위 수술일 다음날부터 당심 감정일 이후
3년에 이르는 기간까지의 한시장해로 본다(제1심과 당심의 감정의는 좌측 손의 이상감
각과 근력약화는 호전되기 힘든 영구장해로 일치하여 보고 있으나, 경추부의 장해에
관하여는, 제1심 감정의는 3년 간 한시장해로, 당심 감정의는 호전되기 힘든 영구장해
로 보고 있어 전해가 다르다. 원고 A이 경추부에 수술을 받고 현재도 경도의 운동장해
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향후 치료를 3년 간 받는 것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기간의 한
시장해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① 2000. 12. 27.부터 2002. 11. 20.까지 : $28.175\% \{15.5 + (100 - 15.5) \times 15/100\}$

② 그 다음날부터 2006. 5. 20.(신체감정일 이후 3년)까지 : $29.4425\% \{16.5 + (100 - 16.5) \times 15.5/100\}$

③ 그 다음날부터 2014. 1. 6.까지 : 15.5%

2) 계산(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 12분의 5분의 복리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라이프넛즈 계산법에 따라 사고일에 근접한 1999. 5. 27.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되, 중간



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

가) 2000. 12. 27.부터 2002. 11. 20.까지 : $2,300,000\text{원} \times 28.175\% \times (38.45705261 - 18.23090443) = 13,107,049\text{원}$

나) 그 다음날부터 2006. 5. 20.까지 : $2,300,000\text{원} \times 29.4425\% \times (70.04663413 - 38.45705261) = 21,391,753\text{원}$

다) 그 다음날부터 2014. 1. 6.까지 : $2,300,000\text{원} \times 15.5\% \times (124.06993199 - 70.04663413) = 19,259,305\text{원}$

다) 합계 : 53,758,107원(13,107,049원 + 21,391,753원 + 19,259,305원)

(나) 위자료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후유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율에 해당하는 피해자인 원고 A분의 후유장해보험금 위자료는 1,000,000원에 해당하고, 배우자인 원고 B분의 위자료는 500,000원이며, 아들인 C분의 위자료는 200,000원이므로, 후유장해보험금 위자료는 위 합산액인 1,700,000원이 되고, 따라서 피고 E는 원고 A에게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1,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도 원고 A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 내지 후유장해로 인하여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약관은 배우자 및 자녀들의 인정된 위자료액을 합산하여 피해자 본인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합계 : 54,958,107원(53,758,107원 + 1,200,000원)

(3) 책임보험금 등 공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이 책임보험(대인배상 I)으로 지



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 E가 그 초과액에 대하여 무보험차상해특약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은 〈별표 1〉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대인배상 I)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과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책임보험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의 액수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7,400,000원이며,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E가 원고 A에 대한 기왕치료비로 3,049,77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무보험차상해특약에 기하여 원고A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위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의 합산액인 66,620,158원(11,662,051원 + 54,958,107원)에서 위 7,400,000원과 위 기왕치료비 중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한 원고 A 부담분 1,524,885원($3,049,770\text{원} \times 0.5$)을 공제한 금액인 57,695,273원이 된다.

피고 E는, 추가로 원고 A이 G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1,500,440원 또한 위 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원이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무보험차상해특약은 상해, 후유장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일 뿐 대물배상은 그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가 위 금원의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약관상 공제하도록 정해진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역시 대물배상금으로 지급된 금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책임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보험금 산정기준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개정되어 1999.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보장자(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자)에게 제3조의 규정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책임보험금의 한도안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보험금의 범위

위에서 인정된 원고 A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 및 후유장해를 기초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보험약관상 책임보험금 산출기준에 따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살펴본다.

(1)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경우 이 사건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위 시행령 제3조 제2호 관련 별지 1의 9급 11호 내지 12호에 해당하고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1,400,000원이다(제1심 법원의 2001. 12. 19.자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여 책임보험금 중 부상보험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위 제2의 다.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치료관계비 11,662,051원이고, 이는 위 한도액을 초과하므로 위 한도액 1,400,000원이 책임보험금 중 부상보험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된다.

(2) 다음으로 후유장해보험금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원고 A의 후유장해의 종류 및 정도, 그리고 기왕증과 제1심 법원의 2002. 6. 30.자 F병원장에 대한 최종적인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남게 된 후유장해의 경우 이 사건 책임보험의 후유장해구분상 위 시행령 제3조 제3호 관련 별지 2의



12급 12호 ‘국부에 완전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당심 법원의 대한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위 원고의 후유장해등급이 7급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으나, 위 소견은 양측 수지의 이상감각증, 좌측 척골신경 부전마비의 후유장해를 중복평가한 것으로서 위 원고의 기왕증을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F병원장은 위 최종적인 사실조회결과에서 위와 같이 그 소견을 변경하였으므로, 제1심 법원의 2001. 3. 2.자 및 2001. 10. 11.자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일부는 배척하기로 한다), 그에 해당하는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6,000,000원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여 책임보험금 중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위 제2의 다.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상실수익액 53,758,107원과 위자료 1,200,000원의 합산액인 54,958,107원이고, 이는 위 한도액을 초과하므로 위 한도액 6,000,000원이 책임보험금 중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된다.

(3) 결국 원고 A에게 책임보험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은 위 (1), (2)항에서 인정된 금액을 합산한 7,400,000원이 된다(원고 B, C도 원고 A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 내지 후유장해로 인하여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약관은 배우자 및 자녀들의 인정된 위자료액을 합산하여 피해자 본인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D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는, 피고 E가 원고 A에게 기왕치료비로 지급한 3,049,770원과 원고 A이 G으로



부터 지급받은 위 1,500,440원은 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3,049,770원은 피고 D가 지급한 금원이 아니므로 위 피고가 그 공제를 주장할 수 없고, 위 1,500,440원 역시 이 사건 책임보험이 상해, 후유장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일 뿐 대물배상은 그 보상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위 피고가 그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들의 책임 소멸·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 A이 배상의무자인 가해자 G으로부터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500,440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민·형사상 합의를 완료하여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특히 이 사건 보험약관에 규정된 무보험차상해특약 보험금 청구의 경우에는 그 요건인 배상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들의 보험금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1,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과 G은 2000. 2. 27. ‘이 사건 사고(치상, 물적피해)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되었다’는 취지의 합의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이 G으로부터 차량수리비 1,500,4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8호증의 5,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과 G이 각각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및 가해자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 A이 그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위하여 뒤늦게 사고처리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G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가 원고 A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과 비교하여 민사상 손해배상합의금으로 보기에겐 과소한 점, 위 합의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을 염두에 둔 것으로서 G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권이 포기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또,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위 원고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보험금 산정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8호증의 2,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가오는 G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를 피하려고 자신의 승용차를 진행방향 우측 노면쪽으로 최대한 운전하였음에도 위 소나타 승용차에 충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 A에게, 피고 D는 책임보험금 7,4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원고의 보험금지급 청구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분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0. 8. 14.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00. 8. 25.부터{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D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니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인데, 위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이전에 피고 D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D는 이 사건 보험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날인 위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00. 8. 14.에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2000. 8. 25.이 된다}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3. 12.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E는 무보험차상해특약 보험금 57,695,273원 및 이에 대한 위 원고의 보험금지급 청구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분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0. 7. 29.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00. 8. 9.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3. 12.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우선 제1심 판결 중 원고 A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B, C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D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당심에서 원금은 제1심보다 많이 인정되었으나, 제1심 및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지연손해금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제1심보다 적게 인용된 것이다), 또 제1심 판결의 원고 B, C에 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3-10-29

여야 할 것이나, 원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부분과 원고 B, C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부분은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항소 및 원고 B, C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부분과 원고 B, C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부분은 당심에서의 지연손해금부분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4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대휘 _____

 판사 김홍준 _____

 판사 김우찬 _____